

'23년 서울청사관리소 한시임기제 공무원(간호) 채용공고

서울청사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서울청사관리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간호	한시임기제 6호	1명	임용일 ~ 24. 7. 31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업무
간호 (한시임기제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실(내과) 운영 · 관리• 의사 진료지원 및 계약 갱신(내과)• 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지원센터 관리• 건강지원시설 운영 및 의사 신규 채용•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3. 7.2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 자격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3. 7.28.]

5.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간호	간호	한시임기제 6호(간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실(내과) 운영·관리 ○ 의사 진료지원 및 계약 갱신(내과) ○ 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지원센터 관리 ○ 건강지원시설 운영 및 의사 신규 채용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행정에 관한 지식 ○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지식 ○ 기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지식
-------------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면접예정일 기준 ('23. 7. 28.)	자격·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국내)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요건 *응시원서접수마감일 기준 ('23.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 공통요건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7. 28.) 기준

☞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국내)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서류전형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근무기간, 담당업무,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에 유의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해당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우대요건 > * 원서접수 마감일(22. 7. 24) 기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시에만 인정

①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최대 40개월, 근무개월 수에 따라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상 해당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은 제외)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②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자격증별 차등우대)

- ▷ 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의사, 약사, 한약사
- ▷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 ▷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각 자격증을 합산하여 만점은 최대 10점 처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인정 불가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전원 합격)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시에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비고
선발예정인원 3배수 미만	적격자 전원	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10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 3배수	적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초과	선발예정인원 5배수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인성검사 후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시험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모집공고	'23.7.13.(목) ~ '23.7.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3.7.19.(수) ~ '23.7.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처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23.7.27.(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면접시험	'23.7.28.(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3.8.1.(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mo.go.kr>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관련 세부 일정·장소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7. 19.(수) ~ 2023. 7. 24.(월)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채용담당자)
 -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17호(정부서울청사)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붙임 서식 활용)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예정(미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

나.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8. 2. ~ '23. 8. 1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등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최종합격 예정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연락처(채용담당자)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02-2100-4515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필수	○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A4 4매 이내)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6.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7.28.)까지 취득 완료하여야 하며, 우대요건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3.7.24.)까지 취득 완료하여야 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	○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필수	○ 본인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필수	○ 본인 자필 서명 필수
10.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10.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6호 : 약 월 2,104,810원(2023년 기준 / 주35시간 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성 명	채용직급 (채용분야)	응시요건(2개 중 택1) * 해당사항 <input type="checkbox"/> 표시
※ 담당자 기재		한시임기제6호 (간호)	<input type="checkbox"/> 자격①, <input type="checkbox"/> 자격②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 출 여 부	
1. 응시원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경력(재직) 증명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주민등록 초본 (필수) ※ 남성만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증빙서류)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응시원서

본인은 서울청사관리소 한시임기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울청사관리소장 귀하

응시원서(원본)			
응시자격요건(해당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한시임기제 6호(간호) <input type="checkbox"/> 자격①, <input type="checkbox"/> 자격②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6호(간호)	근무지역	서울청사관리소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7천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원서(부분)			
응시자격요건(해당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한시임기제6호(간호) <input type="checkbox"/> 자격①, <input type="checkbox"/> 자격②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자격 : 아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 6호 (간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취득 후 6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관련분야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간호직렬 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근무경력에 한함(5. 직무기술서 참조)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기재하지 않음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요건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 6호(간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취득 후 6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관련분야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간호직렬 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근무경력에 한함(5.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응시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3. 7. 28.)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시) 간호6급 자격(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취득 후 6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 7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주OO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2년 경력 인정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원서접수 마감일(23.7.24.)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주OO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2년 경력 인정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외 관련분야 자격증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간호 분야 관련 자격증 》

- ▷ 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 ▷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 ▷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6호 (간호)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상황, 해결노력, 결과, 느낀점을 포함하여 작성

2023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청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에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사항 등 <small>(*학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small>	공무원 채용 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복수국적자, 경력, 학위, 자격증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 자격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